

# 국내 인턴십 운영규정

개정 2019.04.04., 개정 2020.08.25. 개정 2021.02.22. 개정 2023.06.26. 개정 2024.10.14.  
개정 2025.06.23.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의1 제4항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국내 산업체 연수를 통하여 취업 후 현장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계를 굳건히 하여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정의)

국내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생들이 재학 중 산업체에서 연수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 제3조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 ① 인턴십 성적은 18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처리는 Pass/Fail로 한다.<개정 2021.02.22.>
- ② 수업 1/4선 이전에 인턴십 포기 시 학교로 복귀하여 정상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수업 1/4선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성적을 Fail로 표기하며, 재학 중 인턴십 과정을 재수행 할 수 없다.
- ④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인 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인턴십기관의 부도, 휴·폐업, 도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턴십 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잔여기간을 이수 할 수 있다.
- ⑤ 인턴십 과정을 수행 중인 자가 사고와 질병 또는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시, 인턴십 과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턴십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만 석차에서 인턴십 학기를 제외 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 제4조 (지원자격)

- ① 인턴십의 지원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졸업에 이상이 없는 자(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2. 졸업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예정자포함)
  3. 졸업학기 개강 2주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개정 2025.06.23.>
- ② 학과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장이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4년제 학과는 국내인턴십 과정을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 (자격미달 및 제외대상자)

①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2년제 과정은 3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57학점미만 취득자. 3년제 과정은 5학기이상 이수한 자로 92학점미만 취득자.<개정 2024.10.14.>
2. 총 취득한 평점평균이 3.0미만인자.
3.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4. 인턴십 이수 전 졸업에 해당하는 과목(교필, 교양)을 미 이수한 자.
5. <삭제 2021.02.22.>
6. 건강상 이상이 있는 자.
7. 기타 선발기준에 미 통과한 자.

## 제6조 (기간)

인턴십 기간은 재학기간 중 졸업학년도 2학기로 15주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산업체 선정기준)

① 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3. 특정연구 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 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5. 대학 내 학교 기업 또는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창업한 산업체
6.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전공분야 등이 인턴십 과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과에서 추천하여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산업체

## 제8조 (국내 인턴십 운영위원회)&lt;개정2016.08.23.&gt;

- ① 교육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해연도 인턴십을 운영하는 학과 계열장(전공장), 학과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2019.04.04.><개정2020.08.25.><개정2021.02.22.>
-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학과장(전공장) 위원은 당해연도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9.04.04.>
- ③ 위원회는 국내 인턴십 관련 기획, 승인, 운영 및 심의 등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제9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 2이상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부결시에는 반드시 그 부결에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
- ⑤ 인턴십이 종료되면 해당 결과물을 제출받아 인턴십 최종 학점인정(pass/fail)결정 후 결과를 해당 계열(전공)장 및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1.02.22.>

#### 제10조 (인턴십 승인)

- ① 인턴십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1. 국내 인턴십 수행 신청서
  2. 국내 산업체 인턴십 신청서(학과용)
  3. 산업체 인턴십 확인서
  4. 인턴십 협력 협약서
  5. 국내 인턴십 참여 서약서(학생)

#### 제11조 (인턴십 지도)<개정2016.08.23.>

- ① 지도교수는 인턴십 기간 중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
- ② 인턴십 지도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인턴십 기간 중 3회 이상 인턴십 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2019.04.04.><개정2020.08.25.><개정2021.02.22.><개정2023.06.26>

#### 제12조 (제출서류)

- ① 인턴십 종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종합평가서(산업체)
  2. 인턴십 학점인정 평가조서서
  3. 인턴십 지도 결과 보고서(최종)
  4. 인턴십 수행결과보고서(학생)
  5. 국내 인턴십 일지

#### 제13조 (업무분장)<개정2019.04.04.>

- ① 현장실습지원팀은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개정2020.08.25.><개정2021.02.22.>
  1.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임사항 업무
  2. 인턴십과 관련하여 경비지원
  3. 인턴십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인턴십 학생 명단을 교육혁신팀에 통보<개정2021.02.22.>
  4. 기타 인턴십 이수에 관련된 제반사항
- ② 교육혁신팀은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개정2020.08.25.>

<개정2021.02.22.>

1. 인턴십 과정 개설
2. 인턴십 학생 수강 처리
3. 인턴십 학생 학점 부여
4. 인턴십 이수 증명서
5. 기타 인턴십 학점에 관련된 제반사항

③ 인턴십 수행학과는 인턴십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1. 인턴십 과정 개설 요청서 제출
2. 제10조 인턴십 승인 제출서류 작성 및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개정2020.08.25.>  
<개정2021.02.22.>
3. 제12조 제출서류 작성 및 취합 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개정2020.08.25.><개정  
2021.02.22.>
4. 계열(학과)장은 인턴십 운영위원회 결과물에 따라 성적입력을 하고 입력된 명단을  
현장실습지원팀에 제출한다.<개정2020.08.25.><개정2021.02.22.>
5. 인턴십 일지보관(졸업 후 3년)

제14조 (위반자 조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턴십 과정 중 인턴십 기관 내규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자
  2. 고의적으로 인턴십 과정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인턴십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정보유출 등)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인턴십 운영위  
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국내외인턴십운영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